

현안연구 2023-06

사회공헌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 연구

변 성 수

현안연구 2023-06

사회공헌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 연구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96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갓피플 TEL 042-223-0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5
2장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8
1.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개념	8
2. 예우적 보상과 장려적 지원	13
3.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 지원 관련 법규	15
3장 공공시설 이용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18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지원 제도	18
2. 대전광역시 주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현황	20
4장 사회공헌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	26
1. 감면 대상 특성에 따른 지원 방향	26
2. 시책 중요도에 따른 지원 방향	27
3.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실적에 따른 지원 방향	29
5장 결론	32
참고문헌	34

표 차례

[표 2-1]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구성 및 내용	16
[표 3-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관련 감면대상 및 관계 법령	18
[표 3-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관련 감면범위 및 감면을	19
[표 3-3] 장태산 자연휴양림 감면현황	20
[표 3-4] 놀이체험실 및 장남감도서관 감면현황	21
[표 3-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람료 할인 현황(매수)	22
[표 3-6] 대전예술의전당 할인 실적(명)	22
[표 3-7] 주요 복지시설 감면현황	23
[표 3-8] 여성가족원 수강료 감면현황	24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장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보호, 대부지원, 양로 및 요양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우 및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에는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과 국공립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등이 있음
 -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와 별도로 대전광역시에는 시정에 공로가 있거나 공익 및 시책에 따라 장려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 사람에게도 조례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일정 자격이나 기준을 갖춘 명예시민, 자원봉사자, 장기기증자, 다자녀, 헌혈자 등이 있음
 - 이용료 감면 시설에는 대전광역시 공용 주차장, 휴양림, 미술관, 예술의전당 등이 있음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유공자 및 공헌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은 이루어져야 하며, 유공자 및 공헌자의 숭고한 가치와 업적은 존중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도록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함
-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과 지역사회 공헌자

들이 같은 비율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희생 정신과 헌신이 희석되고, 사회 통념상 가지는 사회적 무게감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들의 예우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시설 이용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감면 대상 및 범위의 기준설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공헌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취지와 성격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1) 연구 방법

- 국가유공자 등 및 사회공헌자에 관한 문헌연구
- 예우 및 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도 분석
- 타 시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사례 분석
- 보훈 및 복지, 공공시설 운영 등 관련 전문가 자문

2) 주요 내용

- 대전광역시 공공이용 시설 현황 및 이용료 감면 대상자 현황
- 국가유공자와 공헌자 등 대상자별 공공시설 이용현황
- 이용료 감면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경영실태
- 타 시도 이용료 감면 제도 비교
- 이용료 감면 기준 마련을 위한 지원 방향 제시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류현숙 외(2019)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강조한 예우 중심의 보훈보상체계 구축과 일상생활에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였음. 법제도 측면에서 예우에 대한 법적 개념과 예우시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및 기능 측면에서 국가보훈처 조직내 부서간 업무재조정과 기능강화를 강조하였음. 또한 예우시책 개선방안으로 국가유공자 변호판, 순국선역의 날 꽃 달아주기, 홍보정책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한상용 외(2019)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급여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대상, 지급액 수준, 관련 조례명 등이 상이하여 같은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차별적 보상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차이가 나는 수당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일괄지원하거나 국가보훈처의 예산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백수원(2015)은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제도의 위상을 고찰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분석결과 각국은 국가유공자제도 및 보훈제도에 일반적인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훈의 효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
- 유명옥(2006)은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문제점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분류가 너무 많아 관련 법규에 혼란이 있으며, 유공자의 희소 가치가 적어 유공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함. 이에 유공자 그룹을 국가유공자, 사회유공자, 공무유공자 등 3개의 군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함

- 김미숙 외(2005)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이 연구는 지원정책방향으로 보훈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 적극적 소득유지 정책 실현, 자긍심함양 프로젝트 실시, 보훈행정 접근성 제고, 주거생활 안정 등을 제시함
-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훈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의 분류, 예우 및 보상, 자격기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본 연구는 국가유공자 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여를 한 공헌자들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사회 공헌자 간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국가유공자 및 사회공헌자의 개념
2. 예우적 보상과 장력적 지원
3. 국가유공자 및 공헌자 지원 관련 법규

2장

2장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개념

1) 국가유공자의 개념

-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와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특별공로자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
 -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의 1호)
 -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의 2호)
 -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3호)
 -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4호)

-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5호)
-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6호)
-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7호)
-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과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등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8호)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9호)
-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 중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등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0호)

-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등이며(「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1호, 12호)
4·19혁명 공로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3호)
-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4호)
- 공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5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와 상이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이나 상이를 입은 사람(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이며(「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6호, 17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

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의 18호)

- 위의 18개 국가유공자 유형은 크게 각 개별법으로 인정되는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유공자(공무원유공자 포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호정, 2020: 163)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외에도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있음
- 이러한 유공자의 유형을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국가의 자주독립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국가수호와 안위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적 차원의 유공 그룹, 민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회적 차원의 유공 그룹,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공헌한 직무수행 차원의 유공 그룹 등이 있음(유영옥, 2006: 9)

2) 지역사회공헌자의 개념

- 지역사회공헌자의 개념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로부터 유출해 볼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공헌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공헌자는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함(「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2의 1호, 2호)
- 위의 조례에서 보듯이 사회공헌은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재산이나 재능을 기부한다는 점에서 봉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민간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 사회공헌유형은 크게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은 문화예술지원, 체육진흥, 교육·학술지원, 지역사회개발, 환경보호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문화예술지원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부터 전통문화재 보존, 문화예술 지원,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단체 행사지원, 문화도서 발간 및 보급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체육진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감 제고를 위하여 사회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체육단체 행사지원, 사회체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교육·학술지원은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학교설립 및 후원,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기증 및 지원, 산학협동, 대외연구비 및 대외 연구단체 지원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역홍보, 지역행사지원, 지역공공시설 건립 및 지원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환경보호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동식물 보호, 소음방지, 자원재활용, 수질오염 및 폐기물 처리, 공해방지, 대기오염의 방지,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책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기부협찬은 사회취약계층들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현금기부, 제품기부, 설비 기기 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비원, 인건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불우이웃 돕기, 헌혈, 장기기증, 재해구호, 난민구호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소년 소녀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의료활동,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재가 방문, 의료·보건·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 관련 기술제공, 지역사회단체 자문 등이 있음(문철수, 2004: 346; 주효진·신희정·이서화, 2015: 115~116)

2. 예우적 보상과 장려적 지원

1) 예우적 보상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예우란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지하고 이에 예의를 지켜 존중하고 대우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19: 31)
 - 희생과 공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등이 있음(「국가보훈 기본법」 §3의 1호)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음(「국가보훈 기본법」 §20 ①)
- 특히,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국가보훈 기본법」 §19 ①)
-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공헌과 희생에 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장려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유인으로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 순응이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권오성·박민정, 2009: 292; 김미연, 2008: 50)
- 직접적 수단은 처벌이나 강압 등으로 정부가 법률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획일적·지시적·강제적 방법이며, 간접적 수단은 유인이나 보상 등으로써 자율적 선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이 갖는 의도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임(권오성·박민정, 2009: 292; 김미연, 2008: 50)
- 간접적 수단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보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직접적 수단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권오성·박민정, 2009: 292; 김미연, 2008: 50)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접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조세 및 요금 감면,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간접적 수단의 유형으로 살펴볼 때, 간접적 수단은 장려적 성격을 갖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장기기증, 자원봉사 활성화, 헌혈 권장, 출산 장려 등과 같이 정부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장려적 지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장려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줌”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장려적 지원 정책에는 출산장려, 인구감소대응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단은 경제적 지원으로써 일회성의 출산축하금부터 양육수당 성격의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이 있음(이명석·김근세·김대건, 2012: 160)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청년세대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 도시민 유치 지원, 직무교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박진경·김도형, 2020: 124)

3.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 지원 관련 법규

1)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법규

-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지원 법률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국가보훈 기본법」,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2) 지역사회공헌자 지원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로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로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는 구미시, 원주시, 하동군 등이 있음
-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공헌자 지원 관련 조례의 구성은 아래 [표 2-1]과 같음

[표 2-1]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목적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정의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함
지원사업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보	사회공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음
포상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음

공공시설 이용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지원 제도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3장

3장 공공시설 이용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지원 제도

1) 공공시설 감면대상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관련 감면대상의 유형은 예우적 보상, 사회적 장려, 사회적 배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 및 관계 법령은 아래 [표 3-1]과 같음

[표 3-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관련 감면대상 및 관계 법령

유형	관계 법령
예우적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가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사회적 배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아동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사회적 장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한 세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위의 [표 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장려와 관련한 주요 공헌 유형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인 것을 알 수 있음

2) 공공시설 감면내용

- 대전광역시 주요 공공시설의 감면범위 및 감면율은 아래 [표 3-2]와 같음

[표 3-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관련 감면범위 및 감면율

공공시설	감면범위	감면율	비고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수강료	100분의 50	-
기성종합복지관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수영장, 체력단련실등)	100분의 50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
목재문화 체험장	체험료	100분의 30	-
육아종합 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이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아동
		100분의 50	
산성주민 복지관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
어린이회관	입장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
		100분의 50	
		100분의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가족원	수강료 및 보육실사용료	면제	-
이용노 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장애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
장태산자연 휴양림	휴양림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	-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중 청소년

[표 3-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이용 관련 감면범위 및 감면율

공공시설	감면범위	감면율	비고
		100분의 5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 50	-
치유의 숲	체험료	100분의 50	-
연정국악원	관람료	100분의 50	-
		100분의 30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예술인패스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100분의 50	-
		100분의 30	예술인패스
		100분의 20	꿈나무사랑카드 소지한 세대
한국효문화진흥원	프로그램 이용료	100분의 50	-

주) 비고에서 대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앞의 [표 3-1]의 주요 감면대상자를 의미하며, 정확한 감면대상은 관계 조례를 참고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의 주요 공공시설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인 것으로 나타남

2. 대전광역시 주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현황

1) 장태산 자연휴양림

○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감면현황은 아래 [표 3-3]와 같음

[표 3-3] 장태산 자연휴양림 감면현황

구분	2020		2021		2022	
	건수	감면금액	건수	감면금액	건수	감면금액
국가유공자	5	₩120,000	21	₩795,000	6	₩120,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60,000	14	₩600,000	18	₩660,000
꿈나무사랑카드	12	₩320,000	46	₩1,175,000	44	₩1,870,000
자원봉사마일리지증	9	₩270,000	13	₩350,000	13	₩495,000
장기기증자증	0	₩0	16	₩370,000	1	₩20,000
장애인	12	₩390,000	66	₩1,915,000	74	₩2,830,000
총계	40	₩1,160,000	176	₩5,205,000	156	₩5,995,000

- 장태산 자연휴양림 감면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 등으로 나타남
- 2020년부터 2022년간의 국가유공자의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약 8.37%로 나타남

2)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및 장남감도서관

- 놀이체험실 및 장남감도서관의 감면현황은 아래 [표 3-4]와 같음

[표 3-4] 놀이체험실 및 장남감도서관 감면현황

구분	2020	2021	2022 (9월 현재)	감면금액(원)	비고
국가유공자	0	34	75	250,000	감면율 50%
독립유공자	1	3	3	36,500	
장애인	62	132	175	613,500	
꿈나무사랑카드	26	108	378	955,500	
자원봉사마일리지	0	27	1	45,500	
기초수급자	3	177	452	315,000	감면율 100%
합 계	92	481	1084	2,216,000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및 장남감도서관 감면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 장애인 등으로 나타남
- 2020년부터 2022년 9월(현재)간의 국가유공자의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약 11.28%로 나타남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 2022년 10월 현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감면현황은 아래 [표 3-5]와 같음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단체구매와 학생증 소지자, 예술인패스 소지자 등을 제외한 관람료 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람료 할인 현황(매수)

구분	2020	2021	2022 (10월 현재)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5	174	19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등 소지자	13	20	50
꿈나무 사랑카드	9	84	14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	0	2	14
단체구매(100인 이상)	0	0	226
유료회원 구입	1	2	1
단체구매(20인 이상)	260	1,887	687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학생증 소지자	101	746	541
예술인패스 소지자	25	84	165
합 계	434	2,999	2,017

4) 대전예술의전당

-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할인 현황을 보면, 단체구매(100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단체구매(20인 이상), 경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대전예술의전당 할인 실적(명)

구분	2020	2021	2022
조기예매	0	6	10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	282	16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7	143	124
유공자	22	67	65
유족증	17	44	73
경로	182	692	85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	0	0	0
어린이/청소년	491	2,549	2,712
20세이상 ~ 24세이하	202	1,095	1,234
예술인패스 소지자	35	270	334
꿈나무 사랑카드	27	127	173
단체구매(20인 이상)	411	1,058	1,015
단체구매(100인 이상)	1,931	4,688	4,774
합 계	3,417	11,021	11,621

- 조기예매 및 장애인을 제외하면 국가유공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시민 복지시설

-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 시립체육재활원 등 주요 복지시설의 감면현황은 아래 [표 3-7]과 같음

[표 3-7] 주요 복지시설 감면현황

년도	구분	산성종합복지관		시립체육재활원	
		명수	감면금액	명수	감면금액
2020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767	26,565,000	375	11,290,000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감면	23	417,500	25	527,500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30	600,000	13	277,500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20	375,000	13	292,500
	계	840	27,957,500	426	2,387,500
2021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476	16,650,000	230	19,069,540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감면	-	-	95	1,678,040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	-	19	461,520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	-	18	423,040
	계	476	16,650,000	362	21,632,140
2022 (9월 현재)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2,900	100,645,000	421	23,865,860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감면	72	1,345,000	111	1,963,380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137	2,617,500	25	561,160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25	462,500	17	298,000
	계	13,134	105,070,000	574	26,688,400

- 산성종합복지관과 체육재활원의 가장 많은 감면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나타남
- 산성종합복지관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비해 적었으나 체육재활원은 국가유공자가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6) 여성가족원

- 여성가족원 수강료 감면현황은 아래 [표 3-8]과 같음

[표 3-8] 여성가족원 수강료 감면현황

년도	감면액 (천원)	감면자						
		계 (명)	기초 수급자	국가 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꿈나무 사랑카드	결혼 이민자
2020 (11.30)	75,594	2,022	284	930	79	328	346	55
2021 (12.31)	58,280	1,666	260	793	62	330	201	20
2022 (9.30)	78,030	2,166	330	923	91	467	322	33

- 여성가족원 수강료 감면현황을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가장 높았으며,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의 비중도 한부모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공헌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

1. 감면 대상 특성에 따른 지원 방향
2. 시책에 따른 지원 방향
3.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실적에 따른 지원 방향

4장

4장 사회공헌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

1. 감면 대상 특성에 따른 지원 방향

- 감면 대상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 보상 차원과 지역사회공헌자에 대한 장려적 지원 차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즉, 국가유공자와 지역사회공헌자 간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도 차이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아님
-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공헌자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공헌 유형에 생명 및 신체적 희생의 경우가 많음
- 생명 및 신체의 가치는 양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필수적 요소임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당연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은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에서 국가유공자와 지역사회공헌자간 같은 비율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와 지역사회공헌자 간의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숫자로 계량하기 어려워 차등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다만 국가유공자의 생명과 신체적 희생을 수반하는 공헌이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감면율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을 보면, 고궁 및 능원,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에게는 예우적 보상 차원에서 국립 공공시설과 같은 감면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서 요금감경과 관련하여 감면율은 법령상 의무감면율(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시책 중요도에 따른 지원 방향

- 대전광역시는 출산장려,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사회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부여함(「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0 ②의 2호)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
 -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함(「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9)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1)
 - 장기등 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함(「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1 ①의 2호)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1)
 -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함(「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6)
- 현재 대전시는 지역사회공헌자들에게 같은 비율의 공공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안을 만들 계획임(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6154>)
- 이와 같이 지역사회공헌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율보다는 시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실적에 따른 지원 방향

- 공시설 이용의 이용료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의 공공시설은 문화예술 관련 시설보다는 교육 및 보건, 휴양 등과 관련된 시설로 나타남
 -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꿈나무사랑카드,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 비율이 전체 중 2020년 약 65%, 2021년 약 61.3%를 차지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및 장난감도서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 비율은 전체 중 2020년 약 29%, 2021년 약 35.7%, 2022년 약 42.1% 등으로 나타남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 비율은 전체 중 2020년 약 5.1%, 2021년 약 3.6%, 2022년 약 10.2% 등으로 나타남
 - 대전예술의전당의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 비율은 전체 중 2020년 약 1.92%, 2021년 약 2.15%, 2022년 약 2.7% 등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 비율은 전체 중 2020년 약 63.1%, 2021년 약 59.7%, 2022년 약

57.5% 등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은 여성가족원(수강료)과 장태산 자연휴양림 등으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사회공헌자의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한 이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의 유형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 관련 시설보다는 교육 및 휴양 등과 관련된 시설에 이용료 지원 및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결론

5장

5장 결론

-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희생과 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유공자 및 공헌자의 숭고한 가치와 업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과 지역사회 공헌자들이 같은 비율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통념상 가지는 사회적 무게감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공헌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취지와 성격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먼저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에게 제공되는 보상 및 지원을 예우적 보상과 장려적 지원으로 구분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공헌과 희생에 관한 예우 차원의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지역사회공헌자에 대한 혜택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공동체 강화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이 공공시설 이용 지원 방향은 국가유공자와 지역사회공헌자간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도 차이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아닌 예우적 보상 차원과 지역사회공헌자에 대한 장려적 지원 차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유공자의 생명과 신체적 희생을 수반하는 공헌이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감면율(50% 이상)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공헌자에 대해 시책의 중요도에 따른 차등적(상향적) 감면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공헌자의 이용료 감면율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감면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 위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세 가지 지원 방향은 국가유공자와 지역사회공헌자 간 그리고 일반시민 간의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및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가칭 **사회공헌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사회공헌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에 개정을 통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시책 발굴 및 계획과 함께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도록 함
- 또한 사회공헌위원회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유형 및 범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시민의식조사 및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함
- 사회공헌위원회는 시와 시의회의 추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함

참고문헌

- 권오성·박민정(2009),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행정논총〉 제47권 제1호, 277~309.
- 김미연(2008), 정책유인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제주감귤간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49~67.
- 김호정(2020),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심사결정과 실무상 문제, 〈외법논집〉 제20권 제2호, 85~101.
- 문철수(2004), 기업 PR 캠페인으로서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국내의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5권 제5호, 343~360.
-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영옥(2006), 국가유공자 그룹에 대한 재정립, 〈한국보훈논총〉 제5권 제2호, 9~54.
- 이명석·김근세·김대진(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149~174.
- 주호진·신희정·이서화(2015),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사회적 책임 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2호, 111~125.
- 한국행정연구원(2019),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2. 12. 20), 법률 제19093호.
- 〈국가공무원법〉(개정 2023. 4. 11), 법률 제19314호.
- 〈국가보훈기본법〉(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59호.
- 〈지방공무원법〉(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3. 1. 13), 대통령령 제33227호.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제정 2017. 4. 28), 대전광역시조례 제4887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 2023. 1. 17), 법률 제19220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3. 1. 17), 법률 제19222호.